의 안 번 호

1334

【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7. 3. 31.(금),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7. 4. 5.(수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7. 4. 14.(금)

2. 개정이유

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 및 삭제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 정비(안 제2조, 제4조제2항, 제11조, 제12조)
 - 1) 심의 \cdot 결정 \Rightarrow 심의 \cdot 의결, 관계인 \Rightarrow 전문가
 - 2)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 변경
 - 3) 규칙으로 정한다. ⇒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나.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 반영 삭제(안 제3조제3항제3 호, 제3조제4항, 제9조)
- 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4. 근거법규

- 가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91조제3항
- 나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7조의2, 제88조, 제91조, 제92조, 제96조

5. 검토의견

- O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해촉 사유 등을 상 위법령과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
- O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운영에 따른 권고사항 을 반영하여 법령의 근거 없는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,
-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 을 검토한 바,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근 거 법 규

□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

제91조(지명의 결정) ①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,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두고, 시·도에 시·도 지명위원회를 두며, 시·군 또는 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를 둔다. ② (생략)

③ 시·군·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가 <mark>심의·의결</mark>하여 관할 시·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, 관할 시·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·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,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·도 지명위원회의 보고

사항을 심의·의결하여 결정한다.

④ ~ ⑤ (생 략)

⑥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시·도 지명위원회와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87조의2(위원의 해촉)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7조제3 항제6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-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[본조신설 2015.12.31.]

제88조(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시·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
하고,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(생 략)
- ③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, 위 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 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<mark>임명하거나 위촉</mark>한다.
-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·도 지명위원회에서는 5명 이상으로 하 고,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에서는 3명 이상으로 한다.
- ⑤ 시·도 지명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제87 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·도 지명위원회의 위 원은 시·도지사가,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각각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. 〈신설 2015.12.31.>
- **제91조(간사)** ① 지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명위원 회에는 간사 2명을 두고, 시·도 지명위원회 및 시·군·<u>구 지명위원회</u> 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.
 - ② 국가지명위원회의 간사는 국토지리정보원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지명업 무 및 해양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, 시·도 지명위원회 및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<mark>간사는</mark> 해당 시·도 또는 시·군·<mark>자치구 소</mark> 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.
- 제92조(수당 등) ① 국가지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93조에 따라 출석 한 <mark>전문가</mark>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 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.
 - ② 시·도 지명위원회 및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 위에서 그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 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96조[운영세칙]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 외하고는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